

하도급법준수 4대실천사항

‘협력업체 선정/등록’ 운영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운영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개정한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4대 실천사항 중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 운영을 위하여 한솔테크닉스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실무 수행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1) "협력업체"라 함은 원사업자의 제조·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을 의미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 우선 적용

본 운영기준은 회사의 다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협력업체 선정·운용

제4조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1)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심사 개시 30일전에 사업장, 전자매체(원사업자의 웹사이트, 이하 같음)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포함, 이하 같음)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3) 협력업체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하며, 미선

정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선정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선정기준은 위탁할 거래내용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세부 선정기준별 반영 비중의 배분이 적절하여야 한다.
- (2)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 (3) 회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4)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제7조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 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8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개성

회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사업장, 전자매체 등에 15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회사는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및 절차의 공정성

- (1)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 (2)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반 사례 조치

회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상응하는 제재조치(예시. 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6년 8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